

HANYANG UNIVERSITY

2022-1학기

국가장학 1,2유형 1차 신청 안내



2022-1학기 국가장학금(유형 1,2) 1차 통합신청 및 지급 안내

I. 국가장학 주요 개편 안내

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 확대

■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 확대(2022-1부터 시행)

(5~8구간) 5~6구간 368→390만 원, 7구간 120→350만 원, 8구간 67.5→ 350만 원
 (기초·차상위) 520만 원→첫째 자녀 700만 원,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
 (다자녀)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450~520만 원→등록금 전액

■ 제도개선 사항 안내(2018년부터 ~)

- 기초/차상위 - 성적평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
- 장애우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제한 폐지
- 0학점 경고제 대상 - 0~2분위에서 1 ~ 3분위로 하향
- 2018-1학기부터 소득·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
 - ※ 단, 소득·재산, 가구원, 학적,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, 소득·재산, 가구원, 학적,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·재산 재조사 실시
- 2019-2학기부터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**구제기회 확대**(기존 1회 → 2회로 증가)
- 2019-2학기부터 다자녀장학금의 연령 제한 폐지('88년 이후 출생자 → 나이제한 폐지)

II. 유의사항

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.

1. 2016-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.

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2016-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 시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재단정보 심사 단계에서 **재단거절**로 탈락됩니다. 단, 재학생 중 최대 **2회**에 한해 탈락을 유예하여 제한적으로 지원을 허용합니다.(2회의 구제기회 소진 시 탈락)

*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학생은 최종심사 거절

1차 신청 대상자	비고
재학·신입·편입·재입학·복학생	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, 2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(신청 시 탈락됨)

2. 신고대상자는 재학생 중 ①재외국민 특별전형자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 학생 및 가구원입니다.(2022학년도 신입생도 적용)

3. 신고대상자는 국외 소득을 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재외국민 국외소득 재산 신고제 안내문 필독

재외소득재산 신고제 주요 FAQ 필독 [바로가기](#) 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)

특히 교내 가계곤란 장학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합니다.

- 1. 학부 교내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(국가장학금 포함 학비감면)
 - 특히, **가계곤란교내장학(사랑의실천, 실용인재장학)**은 신청 시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분위를 판정받아야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됨
 - ※ 성적미달 및 등록횟수 초과로 국가장학 선발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분위는 **교내장학 및 교외장학 선발 필수조건**으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 확인

교내 전액장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.

- 1. 국가장학과 교내장학금의 이중수혜 시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.
 - 장학규정에 의거 교내 전액장학생(신입학, 한양브레인 등)이 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선발되면 **국가장학생으로 우선 선발**하고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을 지급합니다.
 - 예) 국가장학 2,600,000원 + 공과대학 신입학장학 4,630,000원(전액)
 - ☞ 국가장학 2,600,000원 + 2,030,000원(신입학장학)

- ※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필독 [☞바로가기](#)
- ※ 국가장학금 FAQ 필독 [☞ 바로가기](#)
- ※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독 [☞ 바로가기](#) 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)
- ※ 국가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[☞ 바로가기](#) 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)

Ⅲ. 국가장학 주요 일정

- 1. 신청기간 : 2021. 11. 24.(수) ~ 2021. 12. 30.(목) 18시
- 2.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: 2021. 11. 24.(수) ~ 2022. 1. 4.(화) 18시
- 3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

Ⅳ. 국가장학 1,2유형 통합 신청 대상자

- 1. 대한민국 국적자이며
- 2. 2022-1학기 한양대학교 학부 재학 · 신입 · 편입 · 재입학 · 복학생
 - 셋째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
 -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
 - ※ 신청제외자 : 2022-1학기 휴학예정자(등록 후 휴학자는 휴학신청 시 소속대학 행정팀 연락)
 - 2022-1학기 무등록 복학생 중 휴학 학기에 전액 장학금 수혜자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(이중수혜 선정불가)

Ⅴ. 국가장학 1,2유형 선발 최저 기준(1,2유형 공통)

- ※ 국가장학 2유형은 1유형을 수혜하여야만 선발이 됩니다.
- 1. 소득분위 8분위 이내
- 2. 성적기준
 -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, 백분위 B학점(80점) 이상(이수평점 2.75, F학점, 재수강실패과목 포함) 유급을 하였을 경우 유급학기 성적으로 반영됨.
 - B학점(80점) 미만 ~ C학점(70점) 이상인 기초/차상위 대학생
 - C학점(70점) 미만인 장애대학생
 - ※ **교내 사랑의실천 장학 대상자도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함.**

VI. 장학금 지급방법

1. 등록금 고지서 감면 대상자

- 가. 등록금 고지서발급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
- 나. 등록금 납부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
- 다. 분할납부 완납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

2. 장학금 환불 대상자 :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- 가. 등록금 납부 후 소득분위가 판정된 경우
- 나. 무등록 복학자가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미수혜한 경우

3. 환불 방법

- 가. 학교 포털에 등록된 환불계좌로 지급.

※ 장학금 환불 계좌 : HY-IN 장학 환불 계좌(환불계좌 등록방법 : HY-IN->신청-등록장학-본인계좌 관리)

단,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재단 또는 대학에서 상환하며
이외 기관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시 이중수혜로 2유형 또는
다음 학기 국가 장학 미선정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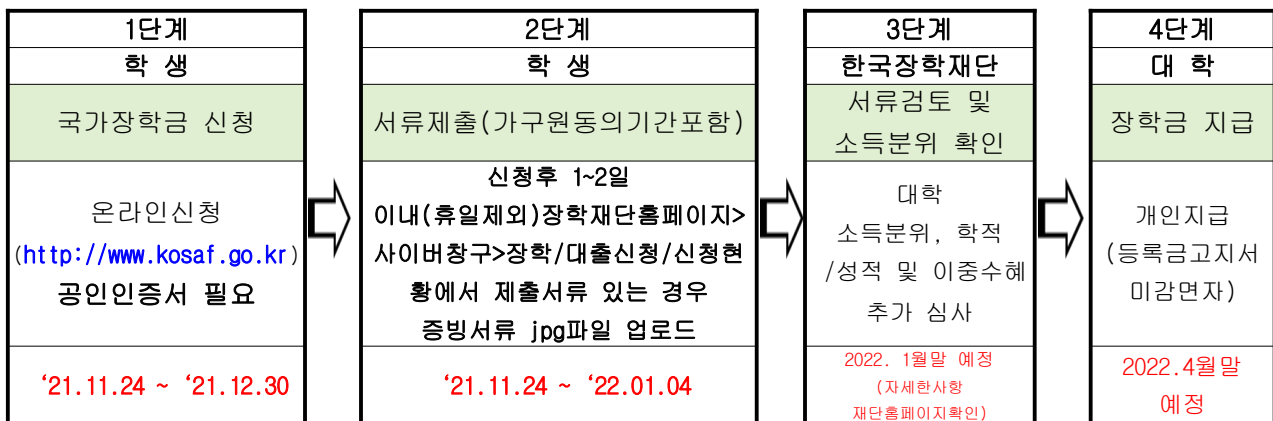
- 나. 지급제외 : 본인납부금액이 국가장학금 1유형 1만원 이하, 2유형 10만원 미만 지급 제외

VII. 이중지원 방지 준수 의무

- 가. 교내외장학금과 학자금대출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
*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: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자 서약 사항으로 당해 학기
학자금 이중 수혜 사유 발생 즉시 학자금 대출상환 및 장학금 반환 할 것

VIII. 국가장학 신청 및 지급 절차 : 자세한 신청 절차는 매뉴얼 참고



IX. 신청 오류 사례

국가장학금(1·11유형)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총정리

CASE 1. 타인 명의로 신청

-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시 오기로 인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
☞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

CASE 2. 소속대학을 잘못 입력

-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으로 장학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
☞ 반드시 **정확한 소속대학**으로 신청

CASE 3. 부정확한 학적 입력

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

- '21년 1학기 편입생이' 22년 1학기에도 "편입"으로 신청하는 경우 -> "**재학생**"으로 신청
- '21년 1학기 신입생이' 22년 1학기에도 "신입"으로 신청하는 경우 -> "**재학생**"으로 신청
- ☞ '21년도 1학기 재입학생만' 재입학 "으로 신청하고 이외의 모든 재학생은 "**재학생**"으로 신청

CASE 4. 다자녀 우대를 못받는 경우

- 학생 기준 미혼/기혼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
☞ (미혼) 형제/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, (기혼)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

CASE 5. 서류 미제출

- 신청완료 후 서류 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
☞ 신청 후 '21.12.30.(목)까지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> 사이버창구> 서류제출>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로드로 제출

CASE 6. 가구원 정보 제공 미동의

- 신청완료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미동의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
☞ 서류제출일('22.01.04.(화))까지 가구원동의(부모님 각각 또는 배우자)를 완료하여야 장학금 소득분위 확정됨

[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안내]

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지원 목적(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)으로 수혜한 학자금(든든학자금, 일반학자금, 농어촌무이자융자,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,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)과 국가 및 교내·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.

등록금 지원 목적(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)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특히, 2012-1학기 ~ 2021-2학기에 교내장학금 수혜 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한 학생의 경우 2022-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할 예정이오니, 대상 학생들은 해당 학자금을 반드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이중수혜 확인방법>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→ 사이버창구 → 이중지원 → 이중지원현황
(※ 현재까지 수혜한 학자금 지원 내역은 안내되나 초과금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.)

1. 초과 수혜한 학자금 온라인 상환방법(든든학자금, 일반학자금, 농어촌무이자융자)

: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로그인 > 사이버창구 > 학자금 대출관리 > 학자금 대출상환 > 중도상환 > 이중수혜 해당학기 선택 > 가상계좌 채번(생성) 후 대출상환
(오프라인 상환 방법 : 1599-2000(한국장학재단 서비스센터)번으로 가상계좌 요청 후 상환

단, 채번한 가상계좌는 당일 사용가능한 일회성 계좌이므로 발급일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)

※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학자금의 경우 해당기관 문의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599-2000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한국장학재단 콜센터,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운영)